

- 불법 주정차 단속 -

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

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불법 주정차 단속)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6년 3월 9일

부산광역시동래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근거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1조의 3, 4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, 근무기간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327호)

2. 채용분야 및 인원

근무 부서	채용 분야	채용 직급	선발 인원	채용 기간	담당 업무
교통과	불법 주정차 단속	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(주 35시간)	1명	임용일로 부터 1년	- 불법 주정차 현장 지도·단속 - 기타 불법 주정차 관련 업무 · 민원처리 및 관내 행사 관련 지원업무 포함

※ 직무내용 공통사항 : 해당 부서(팀) 주요현안 및 부서장(팀장)이 분장 또는 지시하는 업무

※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4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3. 응시자격

□ 응시자격(공통요건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 받은 자
-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현장 단속 업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새벽·야간·주말·휴일에도 단속 업무가 가능한 자

[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]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) -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□ 채용분야 자격요건

직무 분야 자격 기준
○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, 운전이 가능하며 업무 수행 (보행·운전 등)에 지장이 없고,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* 직무 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- 국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에서 불법주·정차 단속업무 근무 경력 ※ 근무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.

4. 보수 및 근로조건

□ 보수기준

채용분야	채용등급	연봉액	비고
불법 주정차 단속	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28,706천원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에 업무난이도 및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(54,678천원 × 60% × 35/40시간)

※ 연봉 외 각종 수당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지급

□ 근무조건

- 근무부서: 동래구 교통과
- 근무시간 및 복무: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규정 준수
- 근무실적 평가: 매년 정기평가

5. 시험방법

□ 1차 서류전형: 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·시험일 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.
※ 단, 재공고에도 적거나 같을 경우 응시인원에 대한 적격심사로 채용 가능

□ **2차 면접시험:**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
- 5대 평정요소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- ※ 5대 평정요소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-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‘하(미흡)’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(미흡)’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‘상’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(‘상’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‘중’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하되 ‘중’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*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함.
 - * 취업지원 대상자 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-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: 구 홈페이지 공고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포기, 임용결격사유 발생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가능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3조의3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
- **면접결과 공개:**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 공개 (단, 평가요소별 상·중·하는 비공개 대상)

6. 시험일정 및 제출서류

□ 시험일정

응시원서 접수	서류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시험장소	최종 합격자 발표
2026.3.20.~3.24. (3일간)	2026.4.1. 예정	2026.4.8. 예정	별도 공지	2026.4.15. 예정

※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□ 응시원서 접수

- 원서교부: 부산광역시동래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게시(내려 받아 사용)
- 접수기간: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접수,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- 접수방법: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(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)
 - ▷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 후 전화 요망
- 접수처: 동래구 총무과

-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(18:00)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.
[우 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237번길 93(복천동) 동래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자]
-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)와 「반신용 봉투」를 함께 우송,
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‘등기용 우표 부착’ 및 수신인 주소·성명 기재

□ 제출서류 *스테이플러 사용 없이 다음 순서대로 제출

- 공통사항(필수사항)
 - ①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
 - ② 응시원서 1부
 - ③ 이력서 1부
 - ④ 자기소개서 1부
 - ⑤ 직무수행계획서
 -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
 - ⑦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

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확인서

⑨ 자격·면허증 사본 1부

⑩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학사 이상) 1부

* 대학교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졸업증명서는 학위증서로 대체 가능

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www.nhic.or.kr) 1부

⑫ 경력 증빙서류(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)

-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-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(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)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(면접)일 기준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‘경력사실확인증명서’ 추가 제출<별지 제8호 서식>
-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

○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① 경력사실확인증명서 1부

7.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함.
-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.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, 임용결격 사유 발생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-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청구 할 수 있음.
 - ※ 단,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합니다.
 - ※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-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신원조사,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임.
-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문의
 - 직무관련 문의: 동래구 교통과(☎ 051-550-4562)
 -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: 동래구 총무과(☎ 051-550-4102/4104)